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명·무기명 투표 시 전자투표 원칙화〉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3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정동영 · 김성환 · 이개호 · 박지원 · 김문수
김동아 · 소병훈 · 김현정 · 조계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5. 28.

3. 회 부 일 : 2025. 5. 29.

※ 의안번호 : 106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수기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14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u>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u>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u>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u>	제112조(표결방법) ① <u>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한다.</u> ----- ----- <u>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手記投票)로 할</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삭제>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① <u>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u>	제114조(수기 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투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② <u>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u>	1. <u>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u>

현행	개정안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2.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 제112조¹⁾는 표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

- 1)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한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의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기명투표²⁾’, ‘무기명투표³⁾’ 등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2] 국회법 제112조에 따른 본회의 투표방식 구분

대 상		구 분	분 류	방 식
• 법안 등의 일반 안건		전자투표 (§112①)	기명	개별 의석에 있는 전자표결기를 통한 표결
• 중요안건 • 헌법개정안 • 대통령환부 법률안 • 인사안건 • 선거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원칙	수기투표 (§112②~⑦)	기명 (헌법개정안)	명패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가·부 또는 성명을 손으로 기재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전자장치 이용 투표 (§112⑨)	무기명	카드형 명패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전자장치에서 가·부 또는 성명을 선택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의 의사표시와 함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임(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46).

3) 무기명투표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기재하거나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임. 무기명투표는 소위 비밀투표로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47).

[표-3] 안전종류별 투표방식 현황

내 용		국회법	투표 방식	비 고
1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	제85조의2제1항	무기명투표 (수기)	-
2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제86조제4항	무기명투표 (수기)	-
3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제106조의2제6항	무기명투표 (수기)	-
4	법안등의 일반안전	제112조제1항	전자투표	개별의석 전자표결기
5	중요한 안전으로 의장제의 또는 의 원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 적의원 1/5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제112조제2항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시 전자장치 이용한 투표 가능 (제112조제9항)
6	헌법개정안	제112조제4항	기명투표	
7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전	제112조제5항	무기명투표	
8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제112조제6항	무기명투표	
9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제112조제7항	무기명투표	
10	탄핵소추안	제130조제2항	무기명투표 (수기)	-

그 밖에도 국회법은 신속처리안전 지정 동의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
의⁵⁾, 탄핵소추안⁶⁾ 등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따로 규정하

- 4) 「국회법」 제85조의2(안전의 신속 처리)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된 안전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라 한다)
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안전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위원
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
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6)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
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의 실시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112조에 따른 기명투표·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등의 표결 시에는 수기(手記)방식의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투표용지에 가(可)·부(否)의 표기를 실수하는 등 투표자의 의도와 달리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⁷⁾ 의사 진행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手記投票)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표결 의사의 반영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투표시스템으로는 전자식 기명투표(전자장치에서 가·부 또는 성명을 선택하는 방식의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헌법개정안 등에 대한 기명투표를 전자식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표시스템 교체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함⁸⁾.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6. 10.)에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거를 수기로 실시하였는데, 투표에 43분이 소요되었고 개표에서만 약 58분이 추가 소요되었음(국회영상회의록 기준)

8) 기명투표를 법률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과 동일하게 개별의석에 있는 전자표결기를 활용한

따라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식 기명투표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회법」 제112조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6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4] 유사취지 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김한규의원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u>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u>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u>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u> ② ~ ⑧ (생략) ⑨ <u>의장이 각 교섭</u>	제112조(표결방법) ① <u>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한다.</u> ----- ----- ----- <u>--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手記投票)로 할--</u> -----. ②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2조(표결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제2항, 제4항부터 제</u>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기표소 내 전자식 기명투표 기능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6대국회 후반기부터 기록표결인 전자투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절차가 번거로운 기명투표의 필요성과 취지가 약화되었으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 당시 의원의 찬반이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투표보다는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47)”는 점을 고려할 때 기표소 내 전자식 기명투표를 가능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현행	개정안	김한규의원안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114조(수기 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투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2.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김한규의원안
<u>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u> ③ <u>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u> 3. <u>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문의처
02)6788-5014